

#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46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1. 29.

발의자 : 김상훈 · 이종명 · 윤한홍  
강석진 · 이완영 · 김승희  
김순례 · 성일종 · 김명연  
정태옥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35조제2항은 “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”라고 규정하여 급여수급통장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.

그러나 같은 법 제27조의2제2항은 “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만이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어,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명절위문금, 교통비, 교복비 등의 부가 급여는 급여수급통장으로 입금이 불가능함.

때문에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가 일반 통장으로 입금된 후 압류되는 경우, 수급자는 부가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.

이에 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 급여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시킴으로써 수급자에게

지급된 수급품의 압류를 금지한 규정의 취지를 살리고 수급자 보호에  
만전을 기하고자 함(안 제27조의2제2항).

##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2제2항 중 “이 법에 따른 급여”를 “이 법에 따른 급여와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7조의2(급여의지급방법 등) ①          (생 략)</p> <p>② 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          기관은 <u>이 법에 따른 급여만이</u>         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          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27조의2(급여의지급방법 등) ①         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         -----<u>이 법에 따른 급여와 제4</u>  <u>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</u>  <u>가 실시하는 급여-----</u>         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